

의안번호	2205583
의 퇴 인	서삼석의원
회 답 일	2024. 12. 5.
추계번호	24B513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산림청장이 국가숲길의 운영·관리를 위해 숲길관리원을 운용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7억 4,800만원, 2030년 140억 4,2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91억 900만원(연평균 118억 2,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본 추계는 숲길 중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숲길’에 대하여 일정 예산의 편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숲길의 운영·관리 (안 제23조의2제2·3항 신설) -숲길관리원 운용 및 경비지원	인건비	7,407	8,194	9,056	9,947	10,901	45,504	9,101
	기본운영비	2,295	2,495	2,702	2,917	3,138	13,548	2,710
	교육비	46	3	3	3	3	58	12
합계		9,748	10,692	11,761	12,866	14,042	59,109	11,822

주: 본 추계는 숲길 중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국가숲길’에 숲길관리원을 두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3조의2제2·3항 신설 (숲길의 운영·관리)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숲길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u>숲길관리원</u>을 둘 수 있음(제1항) 1. 숲길의 안전상태 확인 및 위험요인 제거 2. 숲길의 훼손·오염 방지 및 계도 3. 숲길 안전·편의 시설의 점검 및 보수 4. 제25조의3에 따른 차마의 숲길 진입금지 등 안전사고 예방 5. 제28조에 따른 산악구조대의 활동 지원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그 밖에 숲길의 보전 및 이용자의 안전·편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숲길관리청은 숲길관리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23조의2제2·3항 신설(숲길의 운영·관리)	○	- 산림청 제출자료 참고 -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숲길의 숲길관리원 운용 및 경비 지원
		×	- 미첨부 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숲길에 대한 숲길관리원 운용계획, 경비 지원 여부를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숲길 중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국가숲길’에 숲길관리원을 두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로 한정
- 전체 숲길 8,273개 노선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숲길이 91.2%(7,542개 노선)를 차지함(2023년 말 기준)
 -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숲길에 대한 숲길관리원 운용계획, 경비 지원 여부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비용은 추계대상에서 제외

- 소비자물가상승률, 최저임금상승률 및 기관부담금요율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국가숲길 개요

- 현행법에 따라 숲길관리청은 숲길의 명칭과 노선을 지정·고시하고, 관리 및 운영중
 - (숲길)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한 길²⁾
 - (숲길관리청)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³⁾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최저임금상승률, 기관부담금요율

(2024.11.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5	2.1	2.0	2.0	2.0	2.0	2.0
최저임금(원, 시간당)	9,860	10,030	10,416	10,810	11,217	11,640	12,087
최저임금상승률	2.5	1.7	3.9	3.8	3.8	3.8	3.8
기관부담금요율	11.124	11.124	11.186	11.250	11.314	11.406	11.500

2)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2조의2(숲길의 종류) 숲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이하 “등산”이라 한다)을 하는 길
2. 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하 “트레킹”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길
 - 가. 둘레길: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 나. 트레일: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3. 산림레포츠길: 산림레포츠를 하는 길
4. 탐방로: 산림생태를 체험·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이하 “탐방”이라 한다)을 하는 길
5. 휴양·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3) 법 제22조의3(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⑤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은 숲길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관할 산림(「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숲길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이하 “숲길연차별계획”이라 한

- (숲길 노선 및 길이) 산림청의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 2022년~2026년」 등에 따르면 지정·고시된 숲길은 8,273개 노선, 약 3만9천km⁴⁾(2023년 말 기준)

※ [참고자료 1] 숲길 지정·고시 현황 참고

- 산림청장은 숲길 중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고시중⁵⁾

- (국가숲길) 2024년 기준, 총 9개소의 국가숲길(1,466km) 지정

※ [참고자료 2] 국가숲길 지정 제도 참고

[표 2] 국가숲길 지정현황: 2024년 기준

(단위: km)

	국가숲길	길이	지정일
1	지리산둘레길	289	'21.5.1.
2	백두대간트레일	206	
3	대관령숲길	103	
4	DMZ편치볼둘레길	73	
5	내포문화숲길	320	'21.10.26.
6	울진금강소나무숲길	79	
7	대전둘레산길	138	'22.11.8.
8	한라산둘레길	49	
9	속리산둘레길	209	'23.11.8.
합계		1,466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숲길의 운영·관리(안 제23조의2제2·3항 신설)

- 본 추계에서는 국가숲길의 운영·관리를 위해 숲길관리원을 운용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 숲길관리원 운용 및 경비 지원: 인건비, 기본운영비, 교육비

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숲길관리청이 지정·고시한 숲길은 8,273개 노선, 38,623km로, 지방산림청 지정 731개 노선 3,835km, 지방자치단체 지정 7,542개 노선 34,788km 규모('23년 말 기준)
- 5) 법 제23조의3(국가숲길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 중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연도별 국가숲길 지정 수 및 길이

- 국가숲길 지정 수는 산림청의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 2022년~2026년」의 목표치(2026년까지 총 15개소)를 참고하여 2026년까지 매년 3개소씩 지정하는 것으로 가정
- 이때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 이후인 2027~2030년은 매년 1개소씩 늘어나는 것으로 가정
 - (숲길 지정 수) (~'24년) 9개소 → ('25년) 3개소 → ('26년) 3개소 → ('27년 이후) 매년 1개소

[표 3] 국가숲길 지정 수 전망: 2025~2030년

(단위: 개소)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국가숲길 지정	신규	9	3	3	1	1	1	1
	누적	9	12	15	16	17	18	19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국가숲길 1개소당 길이) 1개소당 평균 163km
 - 2024년 기준 총 1,466km ÷ 9개소

- 따라서 추계기간 동안 운영·관리 대상 국가숲길 지정 수(누적) 및 길이(누적)는 다음과 같음

[표 4] 운영·관리 대상 국가숲길 지정 수(누적) 및 길이(누적): 2024~2030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국가숲길 지정 수(누적) (A, 개소)	9	12	15	16	17	18	19
1개소당 길이 (B, km/개소)	163	163	163	163	163	163	163
국가숲길 총 길이(누적) (C=A×B, km)	1,466	1,955	2,443	2,606	2,769	2,932	3,095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숲길관리원 운용비용

□ 인건비

- 산림청 제출자료에 따라 관리인력(숲길관리원)은 국가숲길 8km당 1명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⁶⁾
- 1인당 월 보수는 최저임금인 월 2,060,740원 적용(2024년 기준)
 - 월 보수 2,060,740원 = 9,860원/시간 × 209시간
 - ※ 이때 월 보수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최저임금상승률 적용
- 기관부담금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되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공기관 기관부담 요율 적용
- 숲길관리원은 연간 10개월 간 운용하는 것으로 가정(산림청 제출자료)

[표 5] 숲길관리원 인건비 추계: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국가숲길 총 길이(누적) (A, km)		2,443	2,606	2,769	2,932	3,095	—
필요 숲길관리원 수 (B=A/8km)		306	326	347	367	387	—
1인당 인건비	월 보수 (C, 원/월)	2,177,000	2,259,330	2,344,410	2,432,790	2,526,230	—
	기관부담금 (D, 원/월)	243,520	254,160	265,250	277,480	290,510	—
	소계 (E=C+D, 원/월)	2,420,520	2,513,490	2,609,660	2,710,270	2,816,740	—
운용 개월 수(F, 월)		10	10	10	10	10	—
인건비 합계 (G=B×E×F, 백만원)		7,407	8,194	9,056	9,947	10,901	45,504

주: 기관부담금은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기관부담 요율 전망치 적용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기본운영비

- 산림청에 따르면 4인 1조로 운영단을 구성하는 경우, 2,900만원의 운영비 소요예정(2024년 기준)
 - 차량임차 7,000천원(700천원/월×10월)
 - 예취기 1,200천원(300천원×4대)

6) 산림청 제출자료

* 비포장도로의 경우 8km당 도로보수원 1명 배치(「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5조제1항)

** 국가숲길 운영·관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20) p.40 8km당 1명 배치

- 여비 9,600천원(10천원/일×10월×24일×4명)

- 유류비·피복비 등 11,200천원

※ 이때, 운영경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표 6] 숲길관리원 기본운영비 추계: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숲길관리원 수(누적) (A, 명)	306	326	347	367	387	—
운영단 수 (B=A/4명, 개)	76	81	86	91	96	—
기본운영비 단가 (C, 백만원/개)	30	31	31	32	33	—
기본운영비 (D=B×C, 백만원)	2,295	2,495	2,702	2,917	3,138	13,548

주: 운영단은 4인 1조로 구성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교육비

○ 산림청에 따르면 숲길관리원에 대해 국가숲길 운영·관리 교육이 필요하며, 숲길관리원 1명당 5만원/일, 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연도별로 신규채용되는 숲길관리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이때 교육비 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7] 숲길관리원 교육비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신규채용 숲길관리원 수(A)	306	20	21	20	20	—
1인당 1일 교육비 단가 (B, 천원/명·일)	50	50	50	50	50	—
교육일수(C, 일)	3	3	3	3	3	—
교육비 (D=A×B×C, 백만원)	46	3	3	3	3	58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결과

- 추계결과, 산림청이 국가숲길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숲길관리원을 운용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91억 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국가숲길의 숲길관리원 운용 및 경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건비	7,407	8,194	9,056	9,947	10,901	45,504
기본운영비	2,295	2,495	2,702	2,917	3,138	13,548
교육비	46	3	3	3	3	58
합계	9,748	10,692	11,761	12,866	14,042	59,109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숲길 중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숲길’에 대하여 일정 예산의 편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금액을 상회할 것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숲길 지정·고시 현황

(산림청 제출자료)

□ 지정·고시된 숲길: 8,273 노선, 38,623km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7)에 따라 숲길관리청장(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숲길을 지정·고시함
 - － 산림청장은 숲길관리청장(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고시한 숲길 중 산림생태적 가치 또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고시⁸⁾

<숲길 지정·고시 현황>

(’23년 말 기준, 단위: 노선, km)

	계		국 가(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노선	거리	노선	거리	노선	거리
합계	8,273	38,623	731	3,835	7,542	34,788
등산로	7,622	31,776	627	2,960	6,995	28,816
트레킹길	561	6,206	81	807	480	5,399
－ 둘레길	368	3,968	30	366	338	3,602
－ 트레일	193	2,238	51	441	142	1,797
산림레포츠길	10	195	1	18	9	177
탐방로	54	368	17	27	37	341
휴양·치유숲길	26	77	5	22.7	21	54.5

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국립, 도립, 군립 등) 내 탐방로는 제외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 국가숲길: 9개 노선, 약 1,466km (’24년 기준)

-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대관령숲길, DMZ편치불둘레길, 내포문화숲길, 울진금강소나무숲길, 대전둘레산길, 한라산둘레길, 속리산둘레길

- 7) 법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① 숲길관리청이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해당 숲길의 노선이 포함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노선선정·조성계획의 적절성,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 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숲길관리청은 효율적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타당성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및 의견 수렴 결과 숲길의 조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숲길의 명칭을 부여하고 그 노선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된 노선의 변경, 지정의 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 8) 법 제23조의3(국가숲길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 중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2] 국가숲길 지정 제도

(산림청 제출자료)

□ 제도개요

- (개념) 숲길 중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여 국가숲길로 지정·고시한 숲길
 - * 법적근거: 「산림휴양법」 제23조의3(국가숲길의 지정) 신설(시행 '20.6.4)
- (지정절차) 신청 → 검토 →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
 - * 신청자: 숲길관리청장(지방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정권자) 산림청장

□ 추진경과

- 「산림휴양법」 개정 국가숲길 지정제도 도입: '19.12월
- 국가숲길 지정 세부기준 마련 하위법령 개정: '20.6월
- 국가숲길 운영·관리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 '20.4~12월
- 국가숲길 운영·관리 활성화 계획 수립: '20.12월
- 국가숲길 지정: 4개소('21.5.1.), 2개소('21.10.26.), 2개소('22.11.8.), 1개소('23.11.8.)
- 국가숲길 운영·관리 근거 마련: '23.10월('24.5월 시행)

□ 지정기준

- (가치)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
- (규모) 숲길의 거리가 길거나 또는 이용자가 많은 숲길
- (체계) 적정 조성, 운영·관리 체계, 연결성, 접근성 등 좋은 숲길

□ 지정현황 : 9개소(1,466km)

- 4개소 지정('21.5.1.)
 - － 지리산둘레길(289km), 백두대간트레일(206km), 대관령숲길(103km), DMZ편치불둘레길(73km)
- 2개소 지정('21.10.26.)
 - － 내포문화숲길(320km), 울진금강소나무숲길(79km)
- 2개소 지정('22.11.8.)
 - － 대전둘레산길(138km), 한라산둘레길(49km)
- 1개소 지정('23.11.8.)
 - － 속리산둘레길(209km)